

重質油分解施設 新設과 關稅 감면 제도의 限時性 문제

鄭 鉉 澤
(京仁에너지 업무과장)

I. 머리말

極東石油를 제외한 정유 4社가 총 110MB/D 규모의 중질유분해시설과 油公, 京仁에너지가 도합 50MB/D 규모의 탈황시설 신설사업허가 신청서를 동자부에 제출하고 있는 차제에, 건설소요자금이 물경 8천여억원이 소요되는 국가적 중점대사업이나, 관세법상 극동사업을 제외하고는 관세 경감혜택을 받을 수 없는 어려운 실정임과 아울러 입법기술상 어떤 형태로든 업계의 이 애로사항을 관세법에 반영해야 한다면 업계 당면과제등을“遮而不作” 식으로 위어본다.

II. 1983년 12월 이전의 중요산업에 대한 關稅 감면 내용

1. 중요산업에 대한 關稅 지원

개도국의 경제발전 초기단계에 있어서, 자본부족, 기술부족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전략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해 외자도입시 關稅를 경감시켜 주는 것은 불가피하다.

즉 초기 투자시의 자금부담을 완화시켜, 국내 산업구조의 조속한 공업화와 특정산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산업정책적으로 유인키 위함이다.

따라서 과거 관세법 28조(중요산업 감세)는 중요산업

의 시설, 기계류, 건설용 재료와 국내 제작이 곤란한 同부분중 원료등을 반입할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여 주도록 되어 있었다.

2. 1983년 12월 關稅法 개정 이전의 감면대상 중요 업종

(1) 시설제 감면

가. 중요산업

— 화학공업(石油精製業, 농약, 펄프, 석유화학 제조업 등)

— 제 1 차 금속제조업

— 일반기계 제조업

— 전기기기 제조업

— 수송기기 제조업

— 기계 부분품 제조업

— 과학계측 및 조정기기 제조업

— 전기철도 운수업

— 전자기기 원재료 제조업

나. 자원개발사업

— 농, 임, 목축업

— 수산업

— 광업

—발전업 및 송전업

(2) 원료품 감면

- 가. 항공기(제조, 수리키 위한 부품 및 원재료)
- 나. 선박(제조, 수리키 위한 부품 및 원재료)
- 다. 배합사료(제조, 수리키 위한 부품 및 원재료)
- 라. 농약(제조, 수리키 위한 부품 및 원재료)

3. 1983년 12월 이전의 중요산업 업종별 관세 감면율

업종	輕減率
石油精製業	55~60%
제철제강업	65~70%
조선업 / 자동차제조업	55~60%
광업(LNG 저장업 포함)	75~85%
송 / 발전업	90%
선박과 내연기관	90%
농약	100%

Ⅲ. 1983년 12월 關稅 감면제도 개편 배경과 그 내용—중요산업감면세

1. 60년대, 70년대의 경제개발정책과 고도성장산업정책, 특히 중화학공업에의 편중, 과잉투자 결과로 정부당국은 자동차, 조선, 石油化學 분야의 조정에 큰 진통을 겪었다.

따라서 정부는 80년대 초에 들어 산업정책의 개편을 위해,

- 산업부문간의 심화된 격차 해소
- 사회계층간의 갈등을 최소화
- 경제성, 효율성, 사회적 균질성의 동시 실현
- 자원의 수급효율화와 고부가가치화

등을 동시적이고도 총체적으로 실현하는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대원칙하에 각종 산업 / 경제정책을 수립했다.

2. 이에 따라 關稅부문 역시 산업자원정책적인 측면에서 그간의 문제점, 특히 重要産業減免稅 제도를 전면 개편하게 되었다.

(1) 1983년 12월 이전의 關稅감면 제도에 따른 문제점 요지

가. 關稅 감면제도의 특정산업 편중
—편중지원분야(산업)의 중복투자, 과잉투자로 산업간 불균형 심화

나. 關稅 감면액의 과다

—관세의 재정기여도(82년 12.9%)를 어렵게 하고
—복지, 고도산업사회의 건설을 위한 關稅지원책으로써 또다른 감면요구를 수용키 곤란

다. 무시한적 關稅감면으로

—정부의존적 기업체질 조장, 수혜의 기득권화, 만성화로 시설투자 촉진에 오히려 역효과 발생

라. 산업간, 물품간 차등지원의 모순

—Seamless Pipe를 예를 들면, 石油化學用일 때는 關稅감면, 일반가스 산업용은 2년 분할납부, 조선용일 때는 2년6개월 분납, 디젤기관용은 3년분납 등

—동일한 물품이 산업별, 용도별로 차등지원된 모순과
—산업간 용도간에 불공평한 과세결과를 초래

마. 기타 사후관리의 곤란 등

(2) 83년 12월 關稅法 전면 개편요지(1983. 12. 29. 법률 제3666호)

위 2-2(1)의 누적된 關稅감면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면서 중요산업에 대하여는 경과규정으로 關稅감면한시제를 도입했다.

● 1983. 12. 關稅法 개정 주요요점 ●

가. 기능별 일반지원제도의 확립

—기술개발주도산업,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유지, 인력개발, 학술연구용품등에 한해서만 감면

나. 산업별 차등지원의 폐지

—종래의 석유화학공업(석유정제업 포함), 제1차금속제조업, 전기기계제조업등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산업별 차등지원을 폐지하여 산업간의 공정경쟁 기반을 구축.

** 다만 특정산업의 시설기자재 감면(석유정제시설 포함)의 대폭적인 축소, 폐지에 따른 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고 종전 감면제도를 전제로한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키 위해 關稅法 부칙으로 경과규정을 둠(後述참조)

다. 차등분납제도에서 균등분납제도로 전환

—산업별 차등에서 물품별 균등분납

라. 사회복지, 정부중점시책, 국제관례등 지원 계속
—안보, 사회복지, 86/88대회용품등 지원

**따라서 精油工場의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은 계속 關稅감면 혜택(後述참조)
 마. 기타 關稅감면제도의 보완

자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2)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해당 산업에 대하여는 關稅法 부칙으로 경과규정을 설치하여,

가. 석유정제업, 제철제강업, 조선업 및 자동차제조업, 광업(LNG저장업 포함), 발전업과 송전업, 선박과 그 내연기관, 농약에 대하여 85년 12월 31일까지 관세를 경감시켜 주고

나. 그래도 공사의 지연, 또는 투자가 진행중으로 감면기간의 재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내에서 즉, 87년 12월 31일까지 그 감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 따라서 85년 상반기, 당시 60MB/D 정유공장을 건설중이던 極東石油(株)와 이미 정유공장 증설사업 허

IV. 현행 관세법상의 精油産業 시설 기자재에 대한 경과조치로서의 關稅경감

1. 關稅法 부칙의 경과규정(관세법 부칙 제 5 조) 概要

(1) 전술한 바와 같이, 종전(83. 12월 이전)의 關稅法 제28조(중요산업 감세)가 축소/폐지됨에 따라 관련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고, 현행 제도를 전제로한 선량한 투

關稅경감 대상산업과 물품의 범위 및 경감률 (재무부령 제1663호 85. 12. 31)

산업 및 물품	비 고	경 감 률 (%)	
		1986년 1월 1일부터 1986년 12월 31일까지	1987년 1월 1일부터 1987년 12월 31일까지
1. 제철제강업	조강기준 연산 20만톤이상(1차증설후 연산20만톤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생산규모로서 제선·제강·압연의 일관공정시설 또는 제강·압연의 공정시설을 갖춘 것에 한한다.	40	40
2. 조선 및 자동차제조업		40	40
가. 조선업	경합금선·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철강선 및 해상구조물의 건조업과 총톤수 10만톤이상인 선박이 입거할 수 있는 선거를 갖춘 선박수리업에 한한다.		
나. 자동차 제조업	제조공정에 연속되는 조립부분 제조업을 포함한다.		
3. 석유정제업	1983년 12월 31일 전에 석유사업법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설허가를 받은 것에 한한다. 다만 증질유 분해시설의 경우에는 1983년 12월 31일전에 신설 또는 증설의 허가를 받은 것에 한한다.	40	40
4. 액화천연가스저장업		50	40
5. 발전업	원자력발전소의 것에 한한다.	60	50
6. 선박용 내연기관		70	—
7. 농 약		90	90

가를 받아두고 있던 (株)油公 및 京仁에너지(株)의 3社は 신/증설용 시설기자재 도입을 위해 動資部와 재무부 등의 요로에 상기 2년의 기간연장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85년 12월말에 재무부령 제1663호로 87년 12월 31일까지의 關稅감면기간 연장조치를 받았다.

라. 그러나 다만 重質油 분해시설 신/증설용 시설/기자재의 경우는 83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증설 사업허가를 받은 분에 한해서만 87년 12월 31일까지 關稅減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

V. 精油産業 시설고도화—重質油 분해 시설 신/증설을 위한 關稅減稅의 계속 필요성

1. 石油수급상 크래킹시설 신/증설 필요성

가.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石油에너지 수요구조 역시 점차 輕質化로 변화하는 것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이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소비지 정제주의 기초하에서 국내 크래킹시설 신/증설은 불가피하다.

나. 미확정된 관계기관등의 수급 예측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輕質油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87년 極東石油(株)의 34MB/D 크래킹시설 가동을 고려하더라도 1990년경 50MB/D 규모의 증설가동, 1993년 내지 1995년경 또 50MB/D 규모의 크래킹시설 증설가동이 되어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예측하고 있다.

2. 산업정책측면에서의 關稅지원 계속 필요성

가. 重質油 분해시설과 脫黃시설은 국내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국가 중점시책이다.

그러므로 관세법 제28조 6 (특정물품 감면세)가 정하는 국가중점시책인 사회복지와 같은 차원내지 비중에서 감면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막대한 시설투자로 인한 자금부담을 關稅지원 측면에서 완화시켜야 한다.

86년 11월 현재 精油4社가 제출한 同 사업허가 신청서상의 소요자금은 약 8,500억원 수준이고, 이중 외자 도입 부문이 전체의 46% 상당 즉 4,617억원(Landed Cost)으로 추정되므로 관세액을 시산한다면 물경 1천

16억원이 부담되고, 만약 현재와 같이 40%를 계속 경감시켜 주면, 약 410억원의 자금부담을 완화시켜 주어 그만큼 국내 油價의 인상요인을 감소시켜, 안정적이고도 경쟁성 있는 국내에너지 공급가격 수준을 형성하므로써 총체적으로 전/후방 관련산업에 지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감면액 시산〉

$4,617\text{억원} \times 1.1 \times 20\%$ (CCCN 84, 85 Group의 평균 관세율) $\times 40\%$ (경감율) = 406억원.

나. 重質油분해/脫黃시설은 기술 고도화를 위한 별도의 신증설 시설투자다.

따라서 기존의 高硫黃 重質제품을 주로 정제/공급하는 단순정제설비의 증설, 또는 보완 투자와는 완전 별개로써, 고도의 기술과 다액의 건설비가 소요되므로, 관세법 제28조(기술개발 주도산업 임시감면)의 입법취지와도 일응 상통한다는 시각에서 감면 필요성이나 의의가 검토되어야 한다.

다. 석유제품은 최종 소비제품이라기 보다 국내여타산업의 밑거름이 되는 소재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이며, 안보적인 측면에서 전략산업이다.

따라서 막대한 시설투자분에 대하여 관세의 부과에 의한 재정기여도 보다는 오히려 감면에 의한 국내 低油價 유지효과가 국민경제에 보다 유익할 것이다. 또한 경과규정의 입법취지에서 전제되는 83년말 이전의 사업허가 조건은 국내에너지 수요구조의 변화와 환경보전 정책의 수립, 실시시기등을 고려시 석유사업법상의 특정 허가사항을 기준하여 정책적 배려가 있고 없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83년 당시 국내 중장기 石油에너지수급 예측시에는 88년의 국가적 대행사를 대비한 低硫黃 輕質油의 안정적인 공급량 확보문제등을 지금처럼 그렇게 중차대하게 절감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다. 關稅감면의 연장조치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철제강등 여타 국가기간산업 업종과 동일한 비중과 기준에서 석유정제업의 감면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제철 제강업등의 同伴에 관한 사정이나 동정은 대략 다음표와 같다.

● 참고자료 ●

업종	연장건의사유 등
제철·제강업	- 광양제철소 건설계획상 90년대 초까지 계속 공사 1기-1985-1987 270만톤 2기-1987-1989 540만톤 3기-1990년대초 1,200만톤 - 기간중 연평균 2,000억원 설비투자 - 평균의산기자재 점유비중=55% - 건설비의 국가지원이 없는 대신 관세측면에서 감면을 통한 자금부담 경감 - 국가기간산업, 소재산업으로써 재정관세확보보다 경쟁력 있는 안정적 소재 공급이 국가적으로 더 이익
조선업	- 1979-1988년까지는 국제해운, 조선경기의 장기불황이나 1989년후 경기가 본격 회복예상되므로 - 시설투자 아닌 생산성 향상을 위한 보완투자의 계속 필요 - 막대한 설비자금 수요의 부담경감으로 국제경쟁력 제고 - 고용효과, 전후방 관련산업 파급효과 고려
자동차제조업	- 전락수출산업으로 국내 3사 1987년 이후에도 시설증설 계속 예상 - 관세부과의 재정수입보다 외환가득액 감소 폭이 더 커서 국가적으로 부의 효과

3. 脫黃시설의 關稅감면 문제

가. 현행 관세법 제28조6(특정물품 감면세) 1항6호에 의하면, 오염물질 배출시설(소음, 진동방지시설 포함)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은 80%의 관세를 경감.

나. 그러나 재무부 고시 제85-12호(85. 8. 13)와 제86-10호(86. 4. 28)으로 발포된 關稅감면물품 지정고시상 계기된 물품들은 정유공장 脫黃시설용 기자재와 거리가 먼 것들로서, Oil Recovery Container, Oil fence 등이다.

다. 關稅法 부칙 제5조(석유정제업등 시설기자재 감면 경과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감면대상 지정물품 중에서는 脫黃시설 기자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전술과 같이, 87년말까지의 한시법규이므로,

라. 향후 크래킹시설 신/증설 시설/기자재에대한 關稅감면기간이 연장된다면 脫黃시설용도 동시 지정 고시되어 연장되어야 한다.

4. 重要산업 시설 기자재의 關稅 분할납부

현행 관세법 제36조에 의하여 중전의 중요산업 관세 감면산업의 소요 물품으로써 지정된 것은 원칙적으로 분할가능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어 감면폐지에 따른 일시적 자금압박을 완화해 주도록 했다. 분할납부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에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

